

## 후원회 등록신청서

문서번호

명 칭 ( 약 칭 )			
사무소의 소재지		전화번호	
대표자	성명	(한자 : )	주민등록번호
	주소		전화번호
정관 또는 규약			
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			

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1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라 후원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○○후원회 대표자

직인

### 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

1. 정관 또는 규약 1부
2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
3. 인영서<별지> 1부
4. 후원회지정서 1부
5.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1부
6. 경선후보자등록 확인서류 1부(지정권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·당대표경선후보자등인 후원회에 한함)
7.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1부

주 1. 후원회 명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 "명칭(약칭)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약칭을 함께 기재합니다.  
 2. 회의록은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"원본대조필" 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
<별 지>

인 영 서	
명 칭 또는 약 칭	
회 인	
	※ 인영에 표시된 문자:
대 표 자 직 인	
	※ 인영에 표시된 문자:
비 고	

- 주 1. 후원회의 등록(신고)시 또는 이미 등록(신고)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(신고)시 사  
용합니다.
2. "명칭 또는 약칭"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 
또는 약칭 중 하나를 정해 기재합니다.
3. 인영은 알아보기 쉽게 깨끗하고, 뚜렷하게 붉은색으로 날인합니다.
4. "비고"란에는 등록(신고) 또는 변경등록(신고)의 사유와 일자 등을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  
다.